

사 실 조 회 신 청

사 건 2000가단0000 손해배상(산)

원 고 000

피 고 주식회사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조회할 곳

(1) ○○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(2) ○○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(3) ○○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

주소: 00시 00구 00길 00 (우편번호 000-000)

(4) ○○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2. 조회할 사항

20〇〇. 〇.경부터 같은 해 〇.경까지 택시기사의 사납금 납입 후 1인당 일(日)수입금 및 월(月)수입금의 평균금액

2000. O. O. 의 원고 OO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

| -ગેરમો ઠો | 스 가 비 이 | 7) 7) 7 D | 미기가스메 | -1) OO 4 -7 | www.klac.or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법원 | 수소법원 | 관 련 조 문 | 민사소송법 | 세294소 | M.M.M |
| 제출부수 | 신청서 1부 | | | | |
| 의 의 | 법원은 공공기관·학교, 그 밖의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 | | | | |
| | 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・사본의 | | | | |
| |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| | | | |
| |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. | | | | |
| 기 타 | ·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 | | | | |
| | 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| | | | |
| |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, 경험을 이 | | | | |
| | 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,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| | | | |
| | 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 | | | | |
| | 단할 수밖에 없으므로,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| | | | |
| |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| | | | |
| |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(대법원 1998. | | | | |
| | 7. 24. 선고 98다12270 판결). | | | | |
| | ·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| | | | |
| | 없는 한 그 기재와 | , – , | , | - ,,, | · l |
| | 리적인 이유의 설시 | | | | |
| | | | | , , - , | |
| |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(대법원 1990. 11. 23. 선고 90다카21022 판결). | | | | |
| | 11. 23. 선고 90나가2 | 21022 판설). | | | |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